

대한교통학회정관

1982. 11. 18 제정
1984. 4. 28 개정
1986. 4. 26 개정
1991. 10. 19 개정
1993. 10. 9 개정
1995. 4. 29 개정
2001. 11. 17 개정
2004. 2. 21 개정
2004. 11. 13 개정
2009. 11. 6 개정
2012. 2. 18 개정
2015. 2. 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교통학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KST)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및 유통 등 교통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연구·응용하여 교통의 공학, 경제, 계획, 경영, 행정 및 정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2.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교통분야에 관한 도서, 문헌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배포
4. 관련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5. 교통에 관련된 산업 및 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산학협동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국제교류) 본회는 취지를 같이 하는 외국학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본회 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을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우대회원, 원로회원, 단체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
- 2) 2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교통분야의 연구 및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3) 교통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6년 이상인 자

2. 준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는 정회원이 되기전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3.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활동에 관심이 깊은 자 또는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4. 우대회원

본 학회의 고문 또는 부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학회발전에 기여한 70세 미만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인 학회활동의 참여혜택이 주어진다.

5. 원로회원

본 학회의 고문, 부회장 또는 우대회원을 역임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학회발전에 기여한 70세 이상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인 학회활동의 참여와 연회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6.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기관회원

본 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입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단체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되고,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추천된다.

제8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
2. 본 회의에서 수집, 정리한 자료 및 도서의 이용
3. 본 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4. 본 회의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상임이사회에 제출
5. 총회에의 출석, 단 의견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9조(회비) 모든 회원을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단체회비, 기관회비 등으로 구분하며, 각종 회비의 금액결정 및 회비의 집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탈퇴 및 징계) 회원으로서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탈퇴서를 본 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또 회원이 본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1.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7인 이내
 - 3) 이사 70인 이내
 - 4) 상임이사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회장은 정원의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 5) 감사 2인
2. 본 회의는 약간인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의무 및 직무) 모든 임원은 본 회의 제 규정에 따라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하며, 각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부회장(학술담당) : 학회 학술활동 및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업무
 - 2) 부회장(행정담당) : 총무, 재무, 섭외 등 제반 행정에 관한 업무
 - 3) 부회장(공공협력) : 정부나 공공기관 관련 업무
 - 4) 부회장(지회담당) : 지방지회 활동에 관한 업무
 - 5) 부회장(기술담당) : 기술응역분야 활동에 관한 업무
 - 6) 부회장(대외협력) : 국내외 교통관련 기관 및 타학회 관련 업무
 - 7) 부회장(특임담당) : 각종 현안과 관련한 특별 업무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6.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필요시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부회장(공공협력)은 당해 직책을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하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고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출) 제12조의 각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1. 회장, 학술담당 부회장, 행정담당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선출의 방법 및 선거인단의 구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나머지 부회장들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감사는 이사회가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되며 추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5.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6. 고문은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제15조(기타 기구)

1. 본회는 제1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장은 지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인준한다. 지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학술담당 부회장, 행정담당 부회장 순으로 대행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이사의 인준과 명예회장의 추대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말 전후 60일 이내에 개최하고, 개최 15일 이전에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 1)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3) 정회원의 50인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을 때

제19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또는 6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명예회장 및 고문으로 구성하며 이사정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에 회부할 안건
 -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 3) 고문, 우대회원, 원로회원의 추대
 - 4)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5)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6) 회원의 징계
 - 7) 국제학술단체 가입 및 탈퇴
 - 8) 기타 회장이 제의한 사항
4.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해외에 체류 중인 이사는 이사회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
 - 2) 이사회를 소집하기에는 부적절한 긴급안건이 있을 때 이들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의결사항은 차기이사회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이미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3)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명
 - 4) 기타사항
3. 상임이사회는 재직인원의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4. 감사, 우대회원, 각 위원회의 위원장, 관련기관의 학회협력 업무담당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직상임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위원회

제22조(편집위원회)

1. 본 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집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담당 부회장을 편집자문으로 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부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1년으로 한다.

제23조(기타위원회)

1. 회장은 본 회의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사무국

제24조(사무국)

1. 본 회의에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과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급여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사무국장과 유급직원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운영,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기금운영수입 등 재원)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기부금, 보조금, 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기금의 종류와 관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예산) 회장은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결산) 회장은 회계년도의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기부 및 보조금) 회장은 기부금과 보조금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접수한다.

제8장 부칙

제30조(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자 4분의 3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자 5분의 4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학술단체에 기증된다.

제33조(운영규칙) 본 회 정관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34조(정관시행)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개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35조(초대 임원선출) 본 정관 제12조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하고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초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6조(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시 현재 고문은 임기완료시 1회 역임한 것으로 한다.

제37조(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시 현재 원로회원인 경우는 원로회원을 유지한다.

제38조(경과조치) 본 정관 개정 시, 기존의 제1, 제2, 제3, 제4, 제5부회장은 각각 부회장(학술담당), 부회장(행정담당), 부회장(공공협력), 부회장(지회담당), 부회장(기술담당)으로 변경하며, 신설된 부회장(대외협력), 부회장(특임담당)의 임기만료일은 기존 부회장과 동일하다.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2004. 11. 13 제정
2009. 11. 6 개정
2012. 2. 18 개정
2012. 10. 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14조 1항에 의해, 회장과 학술담당 및 행정담당 부회장(이하 '회장단'이라 칭한다)을 선출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 1) 회장은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학회의 차기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및 당연직 선거인단수의 결정 등 회장단 선거과정 일체를 운영, 관리, 감독, 홍보한다.

제4조(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단 선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동 해산된다.

제3장 선거인단

제5조(정의) '선거인'이라 함은 회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권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선거인단'이라 함은 선거인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제6조(구성)

- 1) 선거인단은 당연직과 일반직으로 구성된다.
- 2) 당연직 선거인단은 정관 제20조 1항에 규정된 이사회의 구성원, 우대회원, 원로회원으로 한다.
- 3) 일반직 선거인단은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명시된 회장단선거 공고일 기준으로 학회에 가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정회원 중,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단,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 제6조2항에 정의된 당연직 선거인단의 구성원은 일반직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

제4장 선거일 공고,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

제7조(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등록)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라 칭한다)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회장, 학술담당 부회장 및 행정담당 부회장에 중복하여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제9조(후보등록자격) 후보는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정회원으로 가입한지 10년 이상 경과되고,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제10조(정견발표)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제5장 회장단 선출

제11조(투표 및 합산 방법)

- 1) 회장단은 선거인단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2) 당연직은 선거당일 현장투표를 실시하며, 일반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후보자의 우선순위를 기재하는 인터넷 투표를 실시한다.
- 3) 일반직의 투표결과는 후보 중 최상위 우선순위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하며, 결선투표까지 유효하다.(별표 1 참조)
- 4) 당연직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는 1인1표로 반영하고, 일반직 선거인단의 전체투표결과는 당연직 선거인단수와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한다.(별표 1 참조) 단, 일반직 선거인단의 투표인수가 당연직 투표인수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일반직 투표결과를 1인1표로 반영한다.

제12조(회장 선출방법) 회장의 선출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 1)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에 따라서 과반수(이하 "과반수")를 득표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연직은 상위득표순위 2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각 선거인이 1인을 표시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제13조(부회장 선출방법) 부회장(학술담당 부회장 및 행정담당 부회장)의 선출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 1)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투표결과에 따라서 과반수(이하 "과반수")를 득표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연직 선거인단은 상위득표순위 2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 3) 부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는 경우 선출된 신입회장이 부회장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14조(무효처리) 기재된 성명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오기인 경우는 무효로 처리한다.

별표 1 : 회장단 투표결과 합산 방식

(투표순위 변경 방법): 일반직의 투표 순위는 다음 예시에 따라서 변경한다.

- 1) 일반직 투표자 A씨가 철수(1등), 영희(2등), 길동(3등) 순으로 투표하였을 경우 1차 투표에서 A씨는 철수로 투표한 것으로 인정한다.

후보	순위		
	1	2	3
철수	✓		
영희		✓	
길동			✓

- 2) 만약, 철수와 영희가 과반수를 못 넘고 상위득표순위 2인일 경우 2차 투표에서도 A씨는 철수로 투표한 것으로 인정한다.
- 3) 만약, 영희와 길동이 과반수를 못 넘고 상위득표순위 2인일 경우 2차 투표에서 A씨는 영희로 투표한 것으로 인정한다.

(투표결과 합산 방법): 당연직과 일반직의 투표결과는 다음 예시에 따라서 합산한다.

- 1) 투표결과 합산 = 당연직 실제득표수 + 일반직 환산득표수
- 2) 일반직 환산득표수 = 일반직 실제득표수 x (당연직 선거인단수 / 일반직 실제득표수 합) 여기서, “당연직 선거인단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당연직 선거인단수를 의미한다.
- 3) 환산득표수는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당연직 선거인단수 170 적용시, 당연직 170인 전원 투표 참여시 합산 예시

실제 득표수(예시1)					⇒	환산 득표수				
	철수	영희	길동	소계			철수	영희	길동	소계
당연직	90	60	20	170		당연직	90	60	20	<u>170</u>
일반직	230	180	90	500		일반직	78	61	31	<u>170</u>
합계	320	240	110	670		합계	168	121	51	<u>340</u>

※ 당연직 선거인단수 170 적용시, 당연직 160인 투표 참여시 합산 예시

실제 득표수(예시2)					⇒	환산 득표수				
	철수	영희	길동	소계			철수	영희	길동	소계
당연직	80	60	20	160		당연직	80	60	20	<u>160</u>
일반직	230	180	90	500		일반직	78	61	31	<u>170</u>
합계	310	240	110	660		합계	158	121	51	<u>330</u>

※ 당연직 선거인단수 170 적용시, 당연직 80인 투표 참여시 합산 예시

실제 득표수(예시2)					⇒	환산 득표수				
	철수	영희	길동	소계			철수	영희	길동	소계
당연직	40	30	10	80		당연직	40	30	10	<u>80</u>
일반직	230	180	90	500		일반직	78	61	31	<u>170</u>
합계	270	210	100	580		합계	118	91	41	<u>250</u>

이사, 감사, 고문, 우대회원 및 원로회원 추천에 관한 규정

1984. 4. 27 제정
1986. 4. 25 개정
1990. 4. 28 개정
1992. 2. 13 개정
1994. 1. 21 개정
2008. 2. 23 이사 추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
2009. 11. 6 이사, 고문 및 감사 추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교통학회 정관에 따라 이사, 감사, 고문, 우대회원 및 원로회원의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이사, 감사, 고문, 우대회원 및 원로회원 추천을 위한 위원회(이하 "이사선발추천위원회")는 학회의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3조(이사)

1. 이사는 현직이사와 신임이사 후보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임이사 후보의 명단은 상임이사회 의에서 작성한다.
2. 추천될 이사 선정의 기본원칙
 - 1)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칙을 준수하고 일정기간 이상 경과된 자 중에서 선정한다.
 - 2) 학회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공분야를 고루 반영한다.
 - 3) 본 학회의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을 다변화한다.
 - 4) 학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중점을 두되 지역별 배분을 고려한다.
 - 5) 학회활동에서 참여도와 기여도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
 - 6) 경력과 연배를 중시하되 세대이전을 고려한다.
 - 7) 관련 타 학회에 기여도가 높은 자의 순위를 낮추어 학회직의 기회를 넓힌다.

제4조(감사)

1.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감사의 수는 2인으로 하고, 이사선발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제5조(고문)

1. 고문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20년 이상의 회원 중에서 학회 발전에 기여가 인정되고 학회의 운영에 발전적인 조언이 가능한 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회발전에 도움이 가능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당연직 고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3.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고문의 수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당연직 고문을 포함한 고문은 이사선발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제6조(비공개원칙) 이사선발추천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과정에서 거론된 개인에 관한 심의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않는다.

제7조(당연직에 대한 임기) 학회와 관련이 있는 단체에서 선임된 이사 및 당연직 고문은 당해 직책을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하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개정일 현재의 고문은 임기까지 고문직을 유지한다.

학회포상 규정

1992. 1. 23 제정
1992. 12. 21 개정
2002. 11. 16 개정
2007. 11. 10 학술상 시상 규정 전면 개정
2009. 2. 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통 및 관련분야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교통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의 제반 학회포상을 제정하고 그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정의) 학회포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학술상
 - 저술부문 학술상(이하 “저술상”이라 한다): 독창적인 저서, 학문적 가치가 높은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한다.
 - 논문부문 학술상(이하 “논문상”이라 한다): 본 학회의 학회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우수논문상: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3) 공로상: 본 학회 및 교통 관련 분야에서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4) 기타 학회상: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1. 학회상 심사는 학회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 및 지회회원 3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필요시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학술상심사소위원회
 - 2) 우수논문상심사소위원회
 - 3) 공로상심사소위원회
 - 4) 기타 학회상 소위원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1. 위원장은 임기 1년으로 하고,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이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심사 및 시상관련 일반 사항)

1. 수상자가 없는 부문의 시상은 유보할 수 있다.
2. 학회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시상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3.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심사내용은 일절 공표하지 않는다.
4.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학회상 시상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학술상

제6조(학술상의 수상자 수 및 시상 빈도)

1. 학술상의 수상자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2인 이상의 공동수상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수상자로 한다.
3. 학술상 시상 대상은 매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술상의 경우 해당되는 우수 저술이 있는 경우에만 시상하나, 논문상은 매해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술상은 해당년도 제1차 정기총회 시에 시상한다.

제7조(학술상 시상대상 연구업적)

1. 저술상의 시상대상은 당해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12월 31일 이전 5년간에 발간된 저서 및 연구보고서로 한다.
2. 논문상의 시상대상은 당해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다.

제8조(학술상 수상자의 자격)

1. 학술상 수상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칙을 준수하고 2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2.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수상자로 확정된 후 수상전에 사망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9조(학술상 수상후보자의 추천)

1.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는 대상기간 최근 만료일 이후부터 수시로 사무국에서 접수하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마감한다.
2. 본 학회에 가입한지 2년 경과한 정회원은 1편의 후보작을 시상부문별로 추천서 소정양식에 의해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한 추천자가 없을 때는 심의위원이 추가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심사할 수 있다.
4. 저자가 논문을 학회에 제출할 때에 미리 논문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논문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심사 대상 논문이 될 수 있다.

제10조(학술상 수상후보자 제출서류) 학술상의 수상후보자로 선정된 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저서,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2부
3. 기타 자료

제11조(학술상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학술상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9인 이내로 구성하고, 본 학회 육운, 철도, 해운, 항공분야의 4개 분야의 분과위원 중 각 1인과 나머지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2조(학술상심사소위원회의 운영)

1. 소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심사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대표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년도 학술상의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4.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부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외의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우수논문상

제13조(우수논문상의 수상자 수 및 시상 빈도)

1. 학술발표회시 우수논문상의 시상여부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심사소위원회에서 적절한 수를 선정한다.
3. 우수논문상은 해당 학술발표회의 폐회식에서 시상한다.

제14조(우수논문상 수상자의 자격)

1. 수상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이어야 한다.

제15조(우수논문상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각 학술발표회에서의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우수논문상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위원회장이 선임한다.

제16조(우수논문상심사소위원회의 운영)

1. 소위원회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심사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대표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최고연장자가

-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술발표회의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제4장 공로상

제17조(공로상의 수상자 수 및 시상 빈도)

1. 공로상의 시상여부와 수상자 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공로상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학술발표회시에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공로상 수상후보자의 추천)

1. 공로상 수상후보는 학회의 회원이 수시로 공로상후보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2. 추천이 없더라도 학회포상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이 추가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상의 수상후보자로 선정된 후보자는 심사 전까지 이력서 및 공적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공로상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공로상 수상후보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로상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20조(공로상심사소위원회의 운영)

1. 소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심사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기타 학회상

제21조(기타 학회상) 기타 학회상은 학회회장단,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학회포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심사하여 시상하되,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상자의 선정, 심사 등의 관련 절차 및 운영은 공로상의 절차 및 운영에 준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장학금 지급 규정

2002. 11. 16 제정
2017. 2. 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교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통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포함)으로 한다.

제3조(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매년도 학회의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장학심의위원회)

1.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두며 위원장과 심의위원은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3. 장학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장학생 선발에 관한 심의
 - 2) 장학생 에세이 선발대회 심사
 -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선정대상) 선정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학중인 해당 대학의 학과장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교통에 관련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2. 교통관련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3. 장학생 에세이 선발대회 수상자
4. 기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자는 신청 기간 중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첨 양식)
2. 전(前)년도 성적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
3. 기타 장학심의위원회의 요구에 필요한 서류

제7조(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하며 매 학기초 해당 대학의 등록기간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한다.

1. 장학금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가 허위인 경우나 제출한 에세이의 독창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때
2. 학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때
3. 장학지급기간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제9조(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장학금이 있을 경우 그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회비세칙 규정

1991. 1. 12 제정
1995. 4. 29 개정
2004. 11. 13 개정
2009. 2. 21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한교통학회 정관 제9조에 의하여 본 학회 회원에게 부과되는 회비의 징수절차를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회비의 종류는 입회비, 개인회원 연회비(이하 "개인회비"라 호칭), 종신회비, 준회원비, 임원회비, 단체회비, 기관회비로 한다.

제3조(입회비) 개인회원으로 입회할 시에는 당해년도의 개인회비와 같은 금액을 입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회원의 경우에는 정회원 입회비의 1/2로 한다.

제4조(개인회비) 정회원의 연회비인 개인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제5조(종신회비) 정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는 대신 400,000원을 일시납부 함으로써 개인회비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6조(준회원의 연회비)

1. 대학의 교통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과 확고한 직장을 갖지않은 신분으로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준회원의 연회비는 개인회비의 1/2로 한다.

제7조(명예회원의 회비) 명예회원에 대한 회비납부 의무는 면제한다.

제8조(임원회비)

1. 본 학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개인회비와는 별도로 매년 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임원에 대한 연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제9조(단체회비) 단체회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매년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관회비) 기관회원은 매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수령한다.

제11조(회비 및 기타부과금의 납부기한) 회비 및 본회에 납부해야 할 모든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당 회계연도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납부영수증 납부) 회비 및 기타부과금을 수령한 경우 사무국장은 납부내역을 명기한 영수증을 즉시 발부하여 증빙토록한다.

제13조(회비의 변경) 회비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비는 총회에서, 임원회비는 이사회에서, 단체회비와 기관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기금관리 규정

1991. 1. 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교통학회의 기금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금의 종류 및 구성

제2조(기금의 종류) 학회의 기금은 학회의 경상회계와 분리하여 장기적 활동강화를 위해 일반기금, 종신회비기금, 퇴직기금 그리고 기타 특정목적의 기금으로 구성된다.

제3조(일반기금) 일반기금은 매 회계년도 말 경상회계의 결산후 일반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누적액으로 구성된다.

제4조(종신회비기금)

1. 종신회비기금은 정회원이 납부한 종신회비로 구성된다.
2. 종신회비기금의 운용수익 중 은행금리에 상당하는 부분을 회계년도 결산시 익년도 경상회계의 수입으로 이체한다.

제5조(퇴직기금) 퇴직기금은 직원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경상회계에서 이체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제6조(특정목적기금) 특정목적기금은 학회의 장기적 활동강화를 위하여 특정한 목적하에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제3장 기금의 관리

제7조(지출 및 승인)

1. 기금은 구체적 사용목적에 관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2. 특정목적기금은 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퇴직기금은 직원의 퇴직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한다.

제8조(관리책임) 회장은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감사) 감사는 학회기금의 관리와 집행에 관해 매 회계년도말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1991. 1. 12 제정
1995. 4. 29 개정
1996. 7. 9 개정
1999. 6. 19 개정
2012. 10. 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교통학회 정관 제24조의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2조(전문위원회)

1. 학회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관장분야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전문위원회 : 전공분야별 연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2) 대외협력 전문위원회 : 외국단체와의 국제적 학술교류, 북한 내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국내 타 학술단체와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3)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 교통분야의 교육, 기술 및 정책관련 제도, 법률 등의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4) 사업단 : 한시적 필요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3.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특정활동의 목적에 따라 소속위원을 위촉하며, 각 전공영역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4.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분과위원회)

1. 학회의 연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연구회를 설치·운영한다.
2. 연구회는 연구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부회장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각 연구회는 하부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4. 연구회장과 연구위원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5회의 연임이 가능하다. 연구회장, 연구위원장의 임면은 상임이사회 의결로 상시에 할 수 있다.
5. 각 연구회장과 연구위원장은 연구회 및 연구위원회 활동의 목적에 찬동하는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개인 의사에 따라 소속회원을 모집한다.
6. 연구회장과 연구위원장은 제5조 위원회 위원 관리, 제6조 회의소집, 제7조 회의록 작성에서 같은 의무를 가진다.
7. 각 연구회는 운영세칙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그 운영세칙은 상임이사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제4조(활동계획의 입안과 운영)

각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목적에 부합된 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장 단기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 관리)

각 연구회장과 연구위원장은 소속 위원의 명단을 사무국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사무국을 통하여 소집하며, 회의소집통보 시에는 회의 및 행사의 주요내용, 일시, 장소 등을 소속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작성)

위원장은 회의 개최직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게재되어야 한다.

1. 회의 장소 및 일시
2. 참석자 명단
3. 주요토의 내용
4. 의결사항
5. 기타 첨부물

제8조(예산집행)

1.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연구회장 및 연구위원장은 사전에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무국으로부터 집행이 위임된 예산 분에 대해서는 지출 후 그 증빙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의 설치와 해체

제9조(설치와 해체)

각 전문위원회, 연구회와 연구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설치되고 상임이사 의결을 거쳐 해체된다. 단, 한시적 필요성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단은 그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해체된다.

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1994. 1. 21 제정
1995. 2. 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교통학회 정관 제3조의 대한교통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1. 지방회원의 학회활동을 활성화하고 각 지방의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30인 이상의 정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지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기재된 “지회설치신청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회의 명칭
 - 2) 지회사무소의 위치
 - 3) 지회설치의 목적 및 필요성
 - 4) 정회원 10인 이상이 서명한 지회설치 발기인 명부
 - 5) 지회의 회칙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지회의 설치에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제3조(기구)

1. 지회에는 지회장 1인을 둔다.
2. 지회장은 정관 제11조에 규정된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지회에서 선출하고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3.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회 부회장을 둘 수 있으며, 지회의 부회장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운영)

1. 각 지회는 자치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회의 규정에 따른다.
2. 본 학회 회장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지회장에게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지회장은 본 학회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5조(해체) 제2조에 규정된 지회설치의 요건이나 지회운영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 학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해체할 수 있다.

국제학술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규정

1999. 2. 2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교통학회 정관 제5조(국제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학술단체 가입 및 국제학술회의 유치)

본 학회가 국제학술단체에 가입하거나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하고자 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조직위원회)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할 경우 효율적인 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조직위원회 임원)

조직위원장의 임·면은 상임이사회의에서 의결하고 조직위원은 조직위원장이 선임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조(사무국 운영)

1. 조직위원장은 진행상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학회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2. 조직위원회의 사무국은 학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독립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나, 행사가 끝나면 60일 이내에 행사결과 및 예산집행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모든 행사관계 서류를 본 학회 사무국에 이관한 후 해산한다.

사무국 운영 규정

1991. 1. 12 제정
2012. 2. 18 개정
2014. 2. 2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교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24조에 의거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원의 구성 및 임명

제2조(직원) 직원은 사무국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사무국장, 사무원을 말한다.

제3조(직원의 임명) 직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 동의로 임명한다.

제4조(재직기간) 사무국 직원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계약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2.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재계약은 징계, 포상, 근무평정결과 등을 참조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정년은 사무국장은 만 65세, 그 이외의 직원은 만 60세가 되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5조(겸직금지) 직원은 회장의 허가없이 타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임용시의 구비서류) 직원은 임용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신원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1인 이상의 재정보증서(사무국장에 한함)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사진 2매

제7조(수습)

1. 신규 임용된 직원은 3개월 이내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제3장 직원의 직무

제8조(직무) 학회의 직원은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사무국장: 사무국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 1) 학회의 직인보관
 - 2) 공문의 수발 및 문서관리
 - 3) 회원의 관리
 - 4) 주요 회의록의 작성
 - 5) 통장 및 회계관리
 - 6) 학회의 재물관리
 - 7) 감독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 8) 유관기관에 대한 관련행정업무 수행
 - 9) 회원의 경조사 및 교류와 관련된 업무
 - 10) 사무원 감독 등

2. 사무원: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 1) 학회지편집, 공문수발, 학회지 및 간행물배포, 문서관리, 학술행사, 공지
 - 2) 회계관리, 회원관리, 회비관리, 도서관매, 경조사관리 등

제9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회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1. 사무국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거나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성과가 인정될 때, 학회장은 상임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2. 근속 년수 10년마다 해당 직원에게는 상임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직원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잘못을 범했을 때는 회장은 경고, 해직 또는 파면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단, 해직 또는 파면의 경우에는 상임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파면된 직원에게는 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한다.

제12조(사무국 직원의 근무 평정)

1.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년 1회 근무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징계, 포상, 재계약, 승진심사 및 연봉을 계약할 때 반영한다.
2. 근무평정은 별도 근무평정 서식에 의하고 제1평정자는 행정담당부회장, 제2평정자는 학술담당 부회장이 하며 최종 조정자는 학회장이 된다.

제4장 직원의 급여

제13조(급여) 직원의 급여는 본 규정에 따르고 급여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급여의 수준) 급여의 수준은 직원의 경력과 이력 및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연봉(상여금 포함)-직무수당-의료보험비지원금 등으로 구분한다.
2. 연봉이라 함은 학력·경력·업무능력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3. 직무수당이라 함은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4. 의료보험비지원금 :
5. 임시직 직원은 일당으로 지급한다.

제16조(급여의 지급) 직원의 급여는 해당 월의 25일에 연봉의 14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7조(휴직기간 중의 급여)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 규정과 같다.

1. 근무년한이 5년 이하 : 무급여
2. 근무년한이 5년에서 10년까지 : 기본급의 50%
3. 근무년한이 10년 이상 : 기본급의 100%

제18조(상여금) 설날과 추석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에 연봉의 14분의 1을 상여금으로 각각 지급한다.

제19조(퇴직급여금) 직원의 퇴직금은 연봉의 12분의 1을 매년 연금기관에 적립 지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급여 및 퇴직급여금의 산정방법)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보수의 계산상 원미만의 액수는 절삭한다.
2.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3. 퇴직 및 휴직된 자로서 업무수행상 계속 직무할때에는 그 기간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1조(연구수당 및 기타수당)

1. 본 학회 직원이 학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시는 상임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해 급여와는 별도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본 학회 직원이 연구과제를 수주할 경우 상임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해 급여와는 별도로 일정비율의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 규정

1991. 1. 12 제정
2014. 2. 2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교통학회 직원의 복무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근무

제2조(근무기강) 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학회활동을 수행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기밀유지) 공사를 분별·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재임 중 퇴임후에도 업무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회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6조(결근)

1.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질병으로 3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조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외출)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는 외출시간과 행선지 및 용무 등을 외출부에 기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업무

제9조(사무일지 작성) 직원은 업무의 효율화와 기록유지를 위하여 일일 사무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관리) 직원은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학회 회원관리에 관한 문서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1. 회원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회원번호 순으로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회원명부에는 회원번호, 성명, 학력, 경력, 직장, 직위, 주소, 연락처, 학회가입년월일 등 회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3. 회원의 신상 변동사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원명부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신입회원 가입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기 상임이사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5. 회원가입신청서 접수시에는 가입회비, 당해년도 연회비 및 관련서류를 함께 접수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이 부결된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제적회원 또는 탈퇴회원이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신입회원의 가입방법으로 처리한다.
7. 학회지의 배포를 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및 도서관은 기관회원으로 관리한다.

제11조(자매결연단체 관리) 본 학회의 주요간행물을 자매결연단체에 송부하고 또 그들로부터 송부된 학술자료를 보존한다.

제12조(회비관리)

1. 직원은 개인회비, 단체회비, 종신회비, 기관회비 등의 회비 수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회비의 수납은 과년도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미납분을 처리한 후, 이를 해당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종신회비는 과년도 회비의 미납분이 없을 경우 수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최기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단체회비를 수납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최기 상임이사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직원은 당해 회계년도 종료시까지 4년 연속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는 해외 장기체류 유무를 확인하여 그 명단을 상임이사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상임이사회의의 의결로 제거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회원명부, 간행물 발송대장에서 삭제한다.

제13조(회계관리)

1. 직원은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제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직원은 회계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금전출납부 등 각종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경비의 지출은 지출경의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하며 경비내역,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문수발)

1. 직원은 공문의 수발번호에 따라 공문수발 기록철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공문을 분류·보관하여야 한다.
2.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학회지 발간) 직원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논문접수 및 투고논문 관리대장 작성
2. 논문심사료 및 별쇄본 인쇄비 수납 관리
3. 편집위원장에게 접수논문의 보고 및 지시사항 이행
4. 학회지에 게재할 학회활동 상황보고서의 작성

제16조(학회지 및 학회간행물 배포)

1. 직원은 학회지 및 학회간행물의 배포를 위하여 발송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도 배포기준에 따라 배포하여야 한다.
2. 직원은 배포처 및 배포기준을 매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록 작성 및 내규관리) 직원은 아래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총회
2. 고문단회의
3. 이사회
4. 상임사회의
5. 편집위원회의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의

제18조(기타 회의록·문서 및 발간물의 관리) 직원은 효율적인 학회운영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분과위원회 회의록
2.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의 연락처
3. 학회 정관·규정집 및 내규집
4. 고문·명예회장 및 회장단의 취임명부
5. 이사 및 감사 임원취임 명부 및 취임승락서철
6. 상임이사·위원장·편집위원 등의 위촉명부
7.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대장
8. 상훈 수여대장
9.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10. 학회재산명세서
11. 각종 은행구좌 및 자산관리명세서

제19조(기타)

1. 직원은 학회의 주요업무 및 활동내용을 감독기관에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락서는 의결후 1개월 이내에 취합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휴직, 휴일 및 휴가

제20조(휴직) 직원이 일정기간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상임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21조(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직원의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법정공휴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3. 학회 창립기념일
4.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휴일

제22조(휴가) 직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법령의 기준에 의거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연구윤리 규정

2008. 2. 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이하 학회)의 학회지, 교통기술과 정책, 영문학회지등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

-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 시에 임시적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학술담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시는 위원 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 편집위원장,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9인이내를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3조(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표절)

-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3)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5조(동시 논문 투고)

투고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6조(논문 중복 게재)

- 1) ①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②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 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① 교내학술지 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만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② 제①의 규정에 의한 수정·보완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 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수정·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4)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5)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논문 재투고)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8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2/3 이상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이의제기)

-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3)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비밀보장)

-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벌칙

제11조(벌칙)

- 1)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학회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나. 논문 중복 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저자는 최종판정 시점으로부터 5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다. 연구보고서의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게재사항을 결정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가 동시 논문 투고와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한다.
 -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중단한다.
 - 나. 동시 논문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저자는 판정 시점으로부터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부칙

제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용역 시행에 관한 내규

1995. 6. 20 제정
2003. 11. 15 개정
2006. 2. 25 개정
2007. 8. 17 개정
2011. 6. 7 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한교통학회(이하 학회) 명의의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수행 및 발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절차)

1. 외부입찰을 통한 학회명의 연구용역 수행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학회명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회원, 기관은 학회에 연구용역 개요, 연구진, 연구비, 기타 특수한 사항이 기재된 간략한 연구용역 수행 의향서를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2) 회장과 학술부회장은 제출된 의향서 검토 후, 연구용역 수행여부를 결정한다.
 - 3) 연구용역 수행 의향서 접수 시, 사안에 따라, 회원공지를 통해 추가로 수행 의사가 있는 회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4) 연구용역 수행 의향서가 복수가 되는 경우에는 학회의 협의, 조정, 평가 등을 통해 연구진을 결정한다.
2. 외부로부터 학회로 연구용역이 의뢰된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공문 또는 구두의뢰 접수 후, 회장은 연구책임자를 잠정 결정한다.
 - 2) 잠정 연구책임자는 2조 1항 1)호의 연구용역 수행 의향서를 학회로 제출한다.
 - 3) 회장, 학술부회장, 연구관리위원장은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 수행여부 및 연구책임자를 최종 결정한다.
 - 4)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문접수 전에 수행여부와 연구책임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학회명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회원, 기관은 학회에 2조 1항 1)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용역 발주 의향서를 학회로 제출하고, 회장, 학술부회장의 검토, 협의, 조정에 따라 발주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인지대 등을 포함한 계약관련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5. 연구용역 수행 및 발주에 관한 확정 사항은 상임이사회의에 보고한다.

제3조 (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연구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연구관리위원회는 연구용역의 성격에 따라 착수발표회, 중간발표회, 최종발표회 등이 필요한 연구용역을 선별 확인하여 관리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연구용역비의 지급)

1. 선급금 및 중도금은 발주기관에서 수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준공금은 최종보고절차(최종발표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 2부 학회제출)가 완료된 후 지급토록 한다.
3. 각종 연구발표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준공금에서 정산한다.
4. 학회기여금은 연구용역비 총액의 15%를 공제한다. 단, 상임이사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5. 연구용역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서 정한다.

부칙

본 내규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박창호 장학금 운영 내규

2012. 12. 11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한교통학회와 대한토목학회에서 관리하는 '박창호 장학금'의 장학기금 운영과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2.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대한교통학회와 대한토목학회의 회장이 공동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회의 성립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박창호 장학기금 기본자산 추가조성방안 강구
 - 2) 박창호 장학기금 운영
 - 3) 기타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회)

1. 박창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 산하에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회를 둔다.
2.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두며 심의위원은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며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장은 호선한다.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회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사항은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3.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액 결정에 관한 심의
 - 2) 기타 장학기금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4조(박창호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통 및 토목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포함)으로 한다.

제5조(박창호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액은 매년도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박창호 장학금 선정대상) 선정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학 중인 해당 대학의 학과장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교통 및 토목에 관련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2. 교통 및 토목 분야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3. 기타 박창호 장학금 심의소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박창호 장학금 신청) 박창호 장학금 신청자는 신청 기간 중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대한교통학회 또는 대한토목학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각 학회는 이를 장학금 심의소위원회에 전달한다.

1. 장학금 신청서
2. 전(前)년도 성적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
3. 기타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8조(박창호 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일 년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박창호 장학금 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한다.

1. 장학금 신청절차와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
2. 대한교통학회 또는 대한토목학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때
3. 박창호 장학금 지급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제10조(결과 보고)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는 매년 장학기금 운영 결과를 대한교통학회와 대한토목학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본 내규는 대한교통학회 상임이사회와 대한토목학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본 내규의 개정은 박창호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대한교통학회 상임이사회와 대한토목학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